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12월 일 (제285회)

**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
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영복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12월 일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복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09. 12.

발 의 자: 이영복·심홍섭·권광택·
송은섭·민경환·박종갑·
박영웅 (7인)

1. 제안이유

- 농어업·농촌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수정(안 제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을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농업인”을 “농어업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농어업경영체”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
제2조 중 제9호를 삭제하고, 제10호를 제9호로, 제11호를 제10호로, 제12호를 제11호로,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.

제2조제14호 중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농업”이란 「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농업인”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.</p> <p>3. “농업경영체”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9. “어업경영체”란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, 내수면어업계, 어업 생산자단체, 어업인 단체를 말한다.</p> <p>10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「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<u>농어업인</u>”----- -----.</p> <p>3. “<u>농어업경영체</u>”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<u>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</u>를 말한다.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9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11. (생 략)	10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12. (생 략)	11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13. (생 략)	12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<p>14. “식품산업”이란 식품을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·포장·보관·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.</p>	<p>13. ----- ----- ---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[시행 2009.11.28]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어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농업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

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나. 어업인: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3. "농어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
제6조 (식품산업의 범위) 법 제3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하는 산업

2.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·보관·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